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 공고

성남시는 민간제안의 지구단위계획 수립(변경) 등 도시계획 변경 시합리적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"성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"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6. 29. 성 남 시 장

□ 주요내용

1. 적용대상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다음 각 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
 - 가. 5,000㎡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(용도지역 간 변경, 용도지역 세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)
 - 나. 도시계획시설 결정, 변경, 폐지 및 복합화 등의 변경
 - 다.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0년 이상 미개발된 나대지의 허용용도 완화
- 그 외 성남시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

2. 공공기여율 산정기준

-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: 증가하는 용적률의 50% 해당 토지면적
- 도시계획시설 결정, 폐지, 복합화 등 : 해당 토지면적의 15%
- 10년 이상 미개발 나대지의 허용용도 완화 : 해당 토지면적의 12.5% ※ 도시계획변경이 중첩되는 경우 각각의 총량을 합산한 후 5%를 감한 비율로 산정

□ 기타사항

- 해당지침 전문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** 열람방법 : 성남시 홈페이지(http://www.seongnam.go.kr) \Rightarrow 분야별정보 \Rightarrow 도시 \Rightarrow 도시계획 \Rightarrow 고시/공고